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10호 2018. 6. 28.(목)

규 칙

남해군규칙 제1135호 남해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1

고 시

제2018 - 83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 고시 6
 제2018 - 84호 탐동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실시계획 고시 9
 제2018 - 8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12

공 고

제2018 - 698호 도시계획도로(소로237호 남해군창서면마을회관)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공람 공고 .. 13
 제2018 - 706호 마을어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17
 제2018 - 737호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제2018 - 742호 남해군 방재성능목표 공표 36
 제2018 - 745호 2018년 남해군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관리·운영 위·수탁 현황 공고 .. 38
 제2018 - 751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 39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감사실(860-3045, 행정 3045)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35호

남해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공포한다.

2018년 6월 2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6조” 를 “제140조”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6조” 를 “제140조” 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제3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조사개시 7일 전에” 를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로 하고,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7일 이내에” 를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법 시행규칙 별지 제99호서식)” 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6호서식)” 으로 한다.

제30조제1호 중 “법 제73조” 를 “지방세징수법 제22조” 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을 “경상남도지사” 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법 제136조” 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9조” 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가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제140조----- ----- ----- ----- ----- -----.</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6조에 따른 질문, 검사권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범칙사건 조사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2. ~ 8.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제140조----- ----- ----- ----- -----.</p> <p>2. ~ 8. (현행과 같음)</p>
<p>제12조의3(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p> <p>① (생략)</p> <p>1. ~ 2. (생략)</p> <p>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p> <p>② (생략)</p>	<p>제12조의3(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p> <p>①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p> <p>② (현행과 같음)</p>

남 해 군 공 보

(4) 제 610 호

2018년 6월 28일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및 연기신청)

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 전에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등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1. ~ 4. (생략)

③ (생략)

1. ~ 4. (생략)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조사의 착수 등)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착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납세자권리현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99호서식)를 휴대하고 이를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0조(세무조사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이 지방세 세무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폐업 등 조사결과 통지가 곤란한 경우로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및 연기신청)

① -----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④ -----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

제27조(조사의 착수 등) ① -----

②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6호서식) -----

제30조(세무조사 결과통지) -----

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73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 3. (생략)

제31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
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
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군수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조사공
무원의 증표는 법 제136조에 따라 군수
가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파기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33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
항은 법의 규정에 따른다.

-----.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 -----

2. ~ 3. (현행과 같음)

제31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

급) ① -----

-----.

② -----

-----경상남도지사 -----
--.

제32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9조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준용) <삭제>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8 - 83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2일

남 해 군 수

- 1. 하천공사의 명칭 : 부윤천 정비사업
- 2.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시행자 : 남해군수
 - 나.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
-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사유
 - 가. 목적 : 본 과업은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일원에 부윤천을 정비하여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나. 공사개요
 - 하천정비 : L=500m, 교량 1개소
- 4.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일원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8. 6 ~ 2019. 12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붙임 참조)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시행기관인 경상남도 남해군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055-860-32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 해 군 공 보

(8) 제 610 호

2018년 6월 28일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성명 및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남해	창선	오용	1281-50	전	27	27	김병*					
2	남해	창선	오용	1281-48	답	243	243	남해군					
3	남해	창선	오용	1281-47	답	133	133	남해군					
4	남해	창선	오용	1343	구	14,151	5,863	국(농림축산식품부)					
5	남해	창선	오용	1281-51	답	342	342	남해군					
6	남해	창선	오용	1281-52	답	206	206	정해* 외 1인					
7	남해	창선	오용	1281-53	답	540	540	남해군					
8	남해	창선	오용	1281-34	답	339	80	경상남도					
9	남해	창선	오용	996-105	답	194	91	경상남도					
10	남해	창선	오용	996-2	답	793	6	경상남도					
11	남해	창선	오용	55-2	염	101,193	1,141	학교법인창선학원					
12	남해	창선	수산	55-107	염	1,727	1,727	남해군					
13	남해	창선	수산	55-112	염	644	644	남해군					
14	남해	창선	수산	55-73	염	298	298	남해군					
15	남해	창선	수산	55-111	답	622	622	남해군					
16	남해	창선	수산	550	구	5,940	1,450	국(농림축산식품부)					
17	남해	창선	수산	55-110	답	610	610	남해군					
18	남해	창선	수산	55-109	답	500	500	남해군					
19	남해	창선	수산	55-108	답	10	10	남해군					
20	남해	창선	오용	996-116	답	481	481	김차* 외 8인					
21	남해	창선	오용	996-119	답	607	607	남해군					
22	남해	창선	오용	996-6	답	1,574	819	남해군					
23	남해	창선	오용	996-120	답	731	731	남해군					
24	남해	창선	오용	996-118	답	73	73	남해군					
25	남해	창선	오용	996-4	답	1,223	884	남해군					
26	남해	창선	오용	996-114	답	798	798	남해군					
27	남해	창선	오용	996-106	답	182	24	경상남도					
계						134,181	18,950						

남해군 고시 제2018 - 84호

탐동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실시계획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탐동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5일

남 해 군 수

1. 실시계획의 개요

- 사 업 명 : 탐동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 사업위치 :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780-3 외 12필지
- 사업규모 : 급경사지 정비 L=100m
 - 사면 보호 계단식 옹벽(H=1.5~15.0m) : L=50.0m(10단)
- 사 업 비 : 1,600백만원(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등)
- 사업기간 : 2018. 6. ~ 2018. 12.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남해군수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3. 설계도서(설계예산서 포함) : 남해군 안전총괄과 비치 및 열람 가능

4.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 결과

- 타부서 및 타 기관 사업의 중복성과 연계성은 없음

5. 사업효과 분석

- 대사리 일원에 집중호우 시 도로와 인접한 붕괴위험지역의 정비를 통해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6. 연차별 투자계획

사 업 명	구분	합계	'17년까지	'18년 추진	비 고
탐동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사업내용	· 실시설계 · 보상협의 · 급경사지정비	· 실시설계 · 보상협의	· 보상협의 · 급경사지정비	
	사업비(백만원)	1,600	340	1,260	

7. 정비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계획

- 정비사업 완료 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붕괴위험 지역 지정 해제토록 하고,
- 해당시설물에 대하여 연2회(해빙기, 우기)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장기적인 안전관리 예정

8.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하는 토지와 그 소유자 명세 : 붙임참조

9.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안전총괄과(055-860-329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명	권리자	
합계				2,048	1,833					
1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780-3	대	138	138	남해군				
2	"	780-10	도	33	33	박동* 외 1	남치리 172			
3	"	780-15	대	141	141	남해군				
4	"	780-19	임	162	162	남해군				
5	"	780-9	도	10	10	박동* 외 1	남치리 172			
6	"	780-2	대	221	221	남해군				
7	"	780-8	도	7	7	박동* 외 1	남치리 172			
8	"	780-14	대	52	52	남해군				
9	"	780-4	전	192	192	남해군				
10	"	627-6	대	94	94	남해군				
11	"	780-20	임	413	413	남해군				
12	"	617-3	임	322	107	경상남도(교육청)				
13	"	627-3	대	263	263	남해군				

남해군 고시 제2018 - 8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9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지방하천(다천천)
2. 성 명 : 박정0
3. 주 소 : 남해군 삼동면 삼이로
4. 점용목적 : 배수관로 배설
5. 점용위치 :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1785번지(산73-3번지 인근)
6. 점용면적 : 4㎡
7. 점용기간 : 2018. 6. 19. ~ 2023. 6. 18.(5년)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8 - 698호

도시계획도로(소로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공람 공고

남해군 고시 제2017-136호(2018.1.11.)로 기 실시계획인가된 남해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도로, 도시계획도로 소로 2-37호)의 인가사항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공람·공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11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Table with 4 columns: 구분, 종류, 위치, 비고. Row 1: 도시계획도로 (소로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남해군계획시설사업 (교통시설 : 도로),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일원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Table with 5 main columns: 구분, 규모, 결정(M), 금 회(M), 비 고. Sub-columns for 규모: 등급, 류별, 번호, 폭(m). Row 1: 도시계획도로 (소로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소로, 2, 37, 8, 8, 237, 8, 115

남 해 군 공 보

(14) 제 610 호

2018년 6월 28일

3.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남해군수(도시건축과)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4. 사업기간

구분	사업기간		비 고
	당초	변경	
도시계획도로 (소로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2017.5.2. ~ 2018.6.30.	2017.5.2. ~ 2018.12.31.	

5. 공람기간 : 공고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6. 실시계획변경인가 사유

- 소유권 변동사항 정정 및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1 참조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5)에 비치】

- 붙임 :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1부.
2. 의견서 1부. 끝.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조서

1. 공사명 : 도시계획도로(소로 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합 계				925	824	-	-	-	-	-	-
1	서변리	305-1	대	18	18	최*익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	-	-	-
2	서변리	305-15	잡	2	2	최*익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	-	-	지분 (53/464)
				공유자	-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	-	지분 (411/464)
3	서변리	306-15	도	18	18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	-	-
4	서변리	27-7	대	504	504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	-	-
5	서변리	366-25	대	282	282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	-	-

[붙임 2] 의견서

의 건 서

사업명	도시계획도로(소로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개설공사	
사업자	남해군수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제출의견		
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공고 제2018 - 706호

마을어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어업면허 처분 사항 및 소멸 어업권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2일

남 해 군 수

○ 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포획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처분 년월일	비고
						주소	성명		
마을어업 제288호	마을어업	정착성 수산동식물	설천면 동흥지선	162,000	2018.06.12 ~ 2028.06.11	남해군 설천면	동흥어촌계	2018.06.11	재개발
마을어업 제289호	마을어업	정착성 수산동식물	설천면 봉우지선	145,000	2018.06.12 ~ 2028.06.11	남해군 설천면	강진어촌계	2018.06.11	재개발

○ 소멸 어업권 현황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포획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마을어업 제128호	마을어업	정착성 수산동식물	설천면 동흥지선	255,000	2008.06.12 ~ 2018.06.11	남해군 설천면	동흥어촌계	면허기간 만료
마을어업 제129호	마을어업	정착성 수산동식물	설천면 봉우지선	185,000	2008.06.12 ~ 2018.06.11	남해군 설천면	강진어촌계	면허기간 만료

남해군 공고 제2018 - 737호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0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가. 2016년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어 추진한 동대만 간이역 조성사업이 2018년 완공예정에 있음.
 - 나. 보물섬 800리길 조성사업 중 간이역 조성사업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명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간이역 명칭과 위치 정의(제4조)
 - 간이역 이용에 관한 사항(제5조~제8조)
 - 간이역 시설의 관리 및 운영위탁 관한 사항(제9조)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제10조~제17조)
4. 의견제출
 -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52422,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미래전략사업단
- 연락처 : 전화 055-860-3603, 팩스 860-3750, e-mail : miok1024@korea.kr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미래전략사업단 미래전략팀(860-36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해안 일주도로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하여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물섬 800리길”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해안선을 따라 조성되어 아름다운 바다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해안 일주도로를 말한다.

제3조(보물섬 800리길의 조성 및 관리)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물섬 800리길(이하 “800리길”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800리길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계적인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800리길 구간의 연결 및 정비사업
2. 800리길과 연계한 농촌개발 및 관광 자원화 사업
3. 주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제4조에 따른 간이역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간이역 조성사업”이라 한다)
4. 각종 대회·행사 개최 등 800리길 홍보 및 군민 참여 사업
5. 그 밖에 800리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간이역의 설치 등) ① 군수는 800리길이 지나는 주요 지점에 복합시설물인 간이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이역(이하 “간이역”이라 한다)의 명칭·위치 및 시설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간이역의 이용 신청 등) ① 간이역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용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방문, 전화,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간이역 시설 중 공연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공연장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간이역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이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

제6조(이용료) ① 간이역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1. 게스트하우스: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
2. 야외판매시설: 「남해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별표에 따른 사용료
3. 공연장: 별표 2에 따른 이용료
4. 소규모 놀이시설: 놀이시설 1대당 1회 이용 시 1,000원

② 군수는 간이역 시설 이용료를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간이역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이 경우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날만 감경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이하 “국가유공자”라 한다)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또는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이하 “독립유공자”라 한다)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 나.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5·18민주유공자 중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이하 “특수임무유공자”라 한다)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 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7. 군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인 사람
8. 군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9. 65세 이상인 사람
10. 게스트하우스 이용을 위해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역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경상남도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보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게스트하우스 이용료 반환에 대해서는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3에 따른다.

1. 군의 행사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간이역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이용료 전액
2. 사용자가 사용일 7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이용료 전액
3. 사용자가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후 환급

제9조(간이역의 관리 및 운영 위탁) 군수는 간이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800리길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보물섬 800리길 조성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800리길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
2. 간이역 조성사업
3. 800리길 홍보 및 군민 참여 사업
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
5. 그 밖에 800리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부위원장: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부위원장: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해군의회 의원
2.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3. 관광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농·축·수산물 유통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800리길 조성 및 관리사업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 위촉직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6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간이역 명칭 · 위치 및 시설의 구성 (제4조제2항 관련)

명칭	위치	시설구성		비고
동대만 간이역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2-1번지 일원	실내 1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게음식점 58.14㎡ ○ 특산물판매점 106.02㎡, ○ 안내소· 매표소· 화장실 · 물탱크실· 창고 279.92㎡ 	연면적 : 642.78㎡ 건축면적 : 378.69㎡
		실내 2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토음식점 99.93㎡ ○ 게스트하우스 98.77㎡ 	
		실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 50.8㎡ ○ 야외판매시설 ○ 소규모 놀이시설(미니 기차 등) 	
		그 밖의 시설	간이역 내부 및 외부에 설치된 공용시설, 각종 시설물, 조형물, 비품 등 그 밖의 부대설비	

[별표 2]

시설 이용료 (제6조제1항제3호 관련)

명칭	기준	금 액		비고
		평일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야외공연장	4시간/1회	30,000	36,000	

※ 사용시간

- 오전 : 09:00 ~ 13:00(4시간)
- 오후 : 13:30 ~ 18:00(4시간 30분)
- 야간 : 18:30 ~ 23:00(4시간 30분)

[오전, 오후, 야간을 각 회로 하며,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회 이용한 것으로 본다]

※ 초과 사용시 가산 기준

- 1시간미만 : 다음 회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다음 회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2시간이상 :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다음 회 이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사용을 할 수 없다.)

■[별지 제1호서식]

문화체육시설 예약시스템(www.namhae.go.kr/sports/)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 이용신청서(제7조제2항 관련)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남 / 여)
	주소	(전화번호 :)

이용일시	이 용 일	20 년 월 일(요일)		
	이용시간	오전 09:00~13:00 []	오후 13:30~18:00 []	야간 18:30~23:00 []

이용내용	목적	
	이용자시설 (장비)	

• 목적란에는 공연장에서 하려는 공연 등의 개요를 적습니다.(이용인원을 포함한다.)
• 이용자가 별도의 설비가 필요한 경우 이용자시설란에 시설명세를 적습니다.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간이역 내 공연장 이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 해 군 수 귀하

신청 안내			
수수료	없음	처리부서	
사용료	없음	처리기간	5 일

【 현행 조례 】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16.09.23 조례 제219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해안 일주도로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하여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물섬 800리길"(이하 "800리길"이라 한다)이란 남해군의 해안선을 따라 조성되어 아름다운 바다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해안 일주도로를 말한다.
2. "800리길 조성사업"이란 800리길과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광자원 개발과 간이역 조성 사업 등으로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융·복합 관광 자원화 사업을 말한다.
3. "간이역 조성사업"이란 800리길이 지나가는 주요 지점에 지역특산물 판매, 관광, 휴식, 전망, 주차 등이 가능한 복합시설 조성사업을 말한다.

제3조(조성 및 관리) ① 군수는 800리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1. 체계적인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800리길 구간 연결 및 정비사업
2. 800리길과 연계한 농촌개발 및 관광 자원화 사업
3. 주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간이역 조성사업
4. 각종 대회·행사 개최 등 800리길 홍보 및 군민 참여 사업
5. 그 밖에 800리길 조성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등

② 군수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800리길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물섬 800리길 조성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800리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800리길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간이역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3. 800리길 홍보 및 군민 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
5. 그 밖에 800리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위촉직 및 당연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부위원장은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해군의회의원

- 2.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 3. 관광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농축수산물 유통분야에 전문 식견을 갖춘 사람
- 5. 그 밖에 800리길 조성 및 관리사업에 관심이 있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건강상 이유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4.1.7., 2015.1.20.>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제23조(사용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② 일반재산이 용도 변경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6.21.>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6.21.>

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6.7.12., 2017.7.26.>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3.6.21., 2014.7.7., 2016.7.12.>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2016.7.12., 2017.7.26.>

⑧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8.4., 2013.6.21., 2016.7.12.>

[전문개정 2009.4.24.]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7.>

[전문개정 2009.4.24.]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5.7.20., 2016.7.12., 2017.7.26.>

1. 수입

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이용료 등

나.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다.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입

2. 지출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0.8.4., 2013.6.21., 2015.7.20., 2016.7.12.>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13.6.21., 2015.7.20.>

⑥ 제5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6.21., 2014.11.19., 2015.7.20., 2017.7.26.>

[전문개정 2009.4.24.]

[제목개정 2015.7.20.]

제22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②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전년도 관리위탁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위탁비용 등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공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21.>

④ 제3항에 따른 공개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6.21.,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9.4.24.]

남해군 공고 제2018 - 742호

남해군 방재성능목표 공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따라 「남해군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2일

남 해 군 수

1. 목 적 : 도심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이 통합 방재성능을 발휘토록 방재성능목표를 설정 공표함.

2.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3. 방재성능목표

자치단체명	강우지속기간		
	1시간	2시간	3시간
남해군	95mm	145mm	160mm

4. 방재성능목표 적용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제방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遊水池)

다.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거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배수펌프장
-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저류시설과 그 밖의 공작물·시설 중 빗물펌프장
- 3) 「도로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도로시설 중 배수로 및 길도랑
-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 5)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1호)에 따른 고지(高地)배수로

5. 방재성능목표 적용 등

○ 도시지역*내에 기 설치된 방재시설**에 대해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하여 홍수처리 능력 등 방재성능을 평가

－ 평가결과 기존 방재시설의 성능 부족으로 내수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되는 지역에 대한 방재정책*** 수립을 위한 배수구역 내 홍수유출량 산정시 방재성능목표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하수관로, 배수(빗물)펌프장, 우수유출저류시설, 저류지, 우수지, 소하천 등

*** 기존 방재시설 정비(신설·증설·확장 등) 또는 배수구역 내 홍수량 분담을 위한 배수체계 개선(우수유출저감시설, 고지배수로 설치 등) 등의 구조적·비구조적 개선대책

○ 택지개발 등 새로운 도시기반 계획수립 시 설계기준에 따라 계획한 방재시설*의 성능이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

－ 평가 결과 계획한 방재시설의 성능이 부족할 경우 배수체계 개선** 방안 검토를 위한 배수구역 내 홍수유출량 산정 시 적용

* 하수관로 등 방재시설의 계획(규격·규모 등)은 개별법령에 따른 관련 설계기준에서 제시한 재현기간(설계빈도)을 적용하여야 함

** 홍수량 분담을 위한 우수지, 우수유출저감시설, 고지배수로 설치 등의 개선대책

○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하여 홍수유출량 산정

－ 홍수유출량 산정은 합리식, RRL 모델, ILLUDAS 모델, SWMM 모델을 활용하고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

6. 방재성능목표 적용일 : 공고일부터

남해군 공고 제2018 - 745호

2018년 남해군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관리·운영 위수탁 현황 공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및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조례 제5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및 제8조(해수욕장 관리위탁·운영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5일

남 해 군 수

□ 해수욕장별 관리 운영 위·수탁 현황

해 수 욕 장 명	위 탁 자	수 탁 자	이 용 안 내
상 주 은 모 래 비 치	남 해 군	상 주 번 영 회 ☎ 055-863-3573	
송 정 솔 바 람 해 변		송 정 번 영 회 ☎ 055-867-3414	
설 리 해 수 욕 장		설 리 번 영 회 ☎ 010-4849-6733	
두 곡 · 월 포 해 수 욕 장		두 곡 번 영 회 ☎ 010-4930-3277	
사 촌 해 수 욕 장		월 포 번 영 회 ☎ 010-8520-8287	
		사 촌 번 영 회 ☎ 010-4561-0571	

□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

해 수 욕 장 명	개 장 기 간	개 장 일 수	개 장 시 간
상 주 은 모 래 비 치	2018. 7. 06 ~ 8. 19	45	09:00 ~ 19:00
송 정 솔 바 람 해 변	2018. 7. 13 ~ 8. 19	38	09:00 ~ 19:00
설 리 해 수 욕 장	2018. 7. 13 ~ 8. 19	38	09:00 ~ 19:00
두 곡 · 월 포 해 수 욕 장	2018. 7. 13 ~ 8. 19	38	09:00 ~ 19:00
사 촌 해 수 욕 장	2018. 7. 13 ~ 8. 19	38	09:00 ~ 19:00

남해군 공고 제2018 - 751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6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손정0	주소	경남 남해군 남해읍
	소하천명		상신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남해군창선면 상신리 494번지		
	면적	1.4㎡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18. 6. 26. ~ 2023. 6. 25.		
	목적 및 사유	우수관 매설		